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시행 2015.1.2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8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3.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12.8.20. 개정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2015.1.23. 개정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개정 2012.8.20>
2.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개정 2012.8.20.>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칭지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	

	의 직경을 말한다. 2."수평투영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2012.8.20.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2."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호칭지름"이라 함은"을 ""호칭지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평투영면"이라 함은"을 ""수평투영면"이란"으로 한다.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개정 2012.8.20>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4.8.16. 본조신설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은 소방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상수도 양수기 이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당해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 공지경계선에 따라 140미터마다(공중주택단지의 경우는 매동별마다)1개이상을 설치할 것. 4.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서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기준을 준용할 것.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장소에 그 배수관이 설치될 때까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의 설치를 미루게 할 수 있다.	
1989.4.1.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생략)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소방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에 적합할 것 4. (생략) ② (생략)	제112조의2 제1항제2호 및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소방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에 적합할 것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밀리미터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상수도소화전의 규격을 호칭구경 10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명확히 하여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도록 함(제112조의2).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삭제 ② (생략)	
1998.5.12. 삭제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생략) ②삭제	제11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조 변경 제목 변경
2012.8.20. 개정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의 규정"을 "「수도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8.20. 개정.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	제5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이 없는 범위안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9.8.24.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2012.8.20. 개정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6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2015.1.23. 개정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6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15.1.23.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부칙 <제2015-38호,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이전 연혁법령인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1982.9.15.)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93.11.11.)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